# 「성과관리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4. 4. 1. 전부개정 판 (시행 2024. 4. 1.) → 2022. 10. 5. 제정 판 (시행 2022. 10. 1.)

바뀜 5 · 신설 6 · 삭제 2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506/compare?from=1758&to=1443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3:08:2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1조(목적)**<br>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관리를 위하여 연차평가, 학과(부)평가, 대학자체평가, 교육의 질 관리,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대학 운영 전반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,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지속적인 대학운영 개선에 환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**제1조(목적)**<br>이 규정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(이하 '발전계획'이라 한다.)에 따른 학과 및 행정부서의 운영 성과 관리를 통한 대학경영 개선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 **제2조(대상)**<br>성과관리 대상은 학과(부), 행정부서, 부속기관 등 본교의 모든 조직과 교육과정으로 한다. | **제2조(대상)**<br>성과관리 대상은 학과 및 행정부서로 한다. |
| **제3조(정의)**<br>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br>1. '성과관리'란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의 효과적인 질관리를 위하여 각 영역별 성과를 계획-실행-평가-환류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.<br>2. '성과평가'란 제1조에 명시된 연차평가, 학과(부)평가, 대학자체평가, 교육운영평가,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칭한다.<br>3. '성과지표'란 대학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량화되거나 정성적으로 설정된 척도를 말한다.<br>4. '환류'란 평가 결과를 학과(부) 발전계획, 교육과정 개선, 예산 편성 및 대학 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.<br>5. '성과관리시스템'이란 대학의 성과지표, 실적자료, 증빙자료 및 분석결과를 통합적으로 수집·관리·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 | **제3조(정의)**<br>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br>1. '성과관리'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며, 그것이 낳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의도했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다.<br>2. '중장기발전계획'이란 학교의 교육이념 구현을 위해 비전과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 및 실행과제를 정한 계획이다.<br>3. '성과관리종합지수'란 발전계획 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 실행과제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의 실적으로 계량화한 지표이다.<br>4. '핵심지표'란 정부 정책 및 주요 평가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표이다.<br>5. '부서자율지표'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지표이며 이는 발전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관리한다. |
| **제4조(담당부서)**<br>① 대학 성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팀, 교무처, IR센터 및 교육혁신원을 성과관리 관련 주체로 두며,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.<br>② 부서별 주요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.<br>1. 기획팀: 발전계획 및 부서별 연차평가를 주관하며, 성과평가 분석 따른 정책 반영과 성과평가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.<br>2. IR센터: 대학자체평가, 수요자만족도조사, 학과평가를 주관하며, 성과평가 분석 및 성과 평가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.<br>3. 교무처: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의 교육인증평가를 주관한다.<br>4. 교육혁신원: 비교과교육과정의 교육인증평가를 주관한다. | **제4조(담당부서)**<br>① 학과 및 행정부서의 성과관리 행정업무는 기획처, 성과관리 연구·분석업무는 IR센터가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.<br>② 다음 각호에 따라 기획처는 1~7호를 IR센터는 8~10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<br>1.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성과관리 업무 총괄<br>2.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성과지표의 수정 및 개선업무 지원<br>3. 학과 및 부서 발전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<br>4. 학과 및 부서 평가 결과의 누적 관리<br>5. 학과 및 부서 평가 및 성과관리 개선 지원<br>6. 성과관리관련 위원회 운영<br>7. 기타 교육품질 평가 및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8. 성과지표 개발과 관리<br>9. 성과관련 데이터 수집, 분석 및 보고<br>10. 성과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|
| **제5조(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)**<br>① 성과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운영한다.<br>1. 발전전략위원회: 대학전체의 성과관리를 총괄한다.<br>2.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: 발전계획 및 부서별 연차평가 결과를 심의한다.<br>3. 학과(부)평가심사위원회: 학과(부)평가 결과를 심의한다.<br>4. 자체평가위원회: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한다.<br>5. 교육과정운영위원회: 전공·교양교육과정 교육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한다.<br>6.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: 비교과교육과정 교육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한다.<br>7.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: 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를 심의한다.<br>②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성과관리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심의하며,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<br>③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IR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, IR센터는 이를 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br>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되, 통합 성과관리 체계 내에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| **제5조(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)**<br>① 성과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<br>1. 발전전략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전반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심의한다.<br>2.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현황 및 환경 분석, 의견수렴, 발전방향 설정,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다.<br>3.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전략에 따라 학과 및 부서의 세부실행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.<br>4.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. 평가는 정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평가, 과제별 목표 및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로 실시한다.<br>②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「발전전략위원회 규정」, 「발전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내규」를 두며, 기획처에서 주관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. |
| **제6조(운영 및 평가실시)**<br>① 기획처 기획팀과 IR센터는 매 학년도 대학 성과평가 운영을 위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평가 주관부서 및 관련 조직에 통보한다.<br>② 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, 대학자체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한다.<br>③ 모든 성과평가는 '성과지표 수립 - 실행 및 데이터 수집 - 성과분석 및 환류'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.<br>④ 각 평가 주관부서는 영역별 평가 결과를 IR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, IR센터는 보고된 개별 평가 결과를 대학 전체 차원에서 종합·분석한다.<br>⑤ 기획처 기획팀은 IR센터의 성과평가 종합 분석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주요 경영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한다. | <삭 제> |
| **제7조(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)**<br>① 총장은 성과 결과가 우수한 학과(부) 및 부서에 포상하거나, 성과가 미흡한 조직에 대하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br>②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인력 배정,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보완 및 조정, 학과 발전계획 및 부서 운영계획의 개선,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의 질 관리, 대학자체평가 및 대내외 평가 대응 등 대학 경영 및 교육 혁신 전반에 반영하여야 한다.<br>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각 평가 영역별 세부적인 포상 및 | <삭 제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재 기준은 해당 영역의 개별 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<br>④ 일부 평가 결과는 대학정보공시, 홈페이지 또는 내부 공유 체계를 통해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. | |
| <신 설> | **제6조(계획)**<br>① 발전계획은 대내외 주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장이 판단하여 수립·고도화 한다.<br>② 학과 및 부서는 발전계획에 따라 단위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<br>③ 매년 학과 및 부서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학과·부서별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 및 성과지표,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. 단 예산 및 성과지표는 전년도 연차평가와 연계하고 기획처와 협의하여 수립한다. |
| <신 설> | **제7조(성과지표수립)**<br>① '성과관리종합지수'는 발전계획 실행과제의 목표에 따라 정량적으로 지표를 설정하며, 연차평가에 따라 지표를 수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<br>② 정부정책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해 발전계획과 별도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, 이를 '핵심지표'라 한다.<br>③ '부서자율지표'는 부서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정하여 학과 및 부서와 기획처 간 협의를 통해 성과지표를 수립한다. 단, 발전계획의 성과향상을 위해 지표설정 시 발전계획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 및 지표를 설정한다. |
| <신 설> | **제8조(운영)**<br>①기획처와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.<br>② IR센터는 성과지표 개발, 데이터 수집 및 분석,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와 상호협력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. |
| <신 설> | **제9조(평가)**<br>① 발전계획 평가는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로 나뉘며, 기획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.<br>② 발전계획 평가를 위해 학과 및 부서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 값을 관련부서로부터 제출받아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연차평가보고서를 발전전략위원회에 제출한다.<br>③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서별연차보고서의 분석 등을 IR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, IR센터는 각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|
| <신 설> | **제10조(환류)**<br>① 연차평가보고서의 발전계획 환류내용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정·보완 할 수 있다.<br>② 학과 및 부서는 연차보고서의 환류내용을 적용하여 향후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사업계획을 작성한다. |
| <신 설> | **제11조(평가결과 공유 및 활용)**<br>① 총장은 학과 및 행정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를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대학발전에 활용한다.<br>②총장은 운영성과 향상을 위해 성과 결과가 우수한 학과 및 부서에 포상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. |